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 정 희 의원입니다.
- 본 의원 외 26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서울특별시 한강시민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선임 대상을 동 조례에서는 ‘규칙에서 정하는 실·국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칙에서는 본부장까지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게 수정하고,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재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 또한, 어문 규정과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 일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4조 제2항 제6호 및 3항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재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22조 제4항 제1호의 서울특별시 한강시민위원회 당연직 위원 선임 대상에 ‘실·국장’ 외에 추가적으로 ‘본부장’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